

이륜자동차 정기검사 독촉장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

「대기환경보전법」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기간 내 받지 아니하여 동법 시행규칙 제86조제6항에 따라 “이륜자동차 정기검사의 신청기간 경과알림” 을 소유자에게 우편발송 하였으나,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2023. 6. 5.

원 주 시 장

1. 공고대상

| 대상자 | 차량번호 | 대상자 주소 | 문서제목 | 반송사유 |
|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
| 이*진 | 서울동작차7*** | 강원도 원주시 흥양로 102번길 22, ***동 ***호 |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기간경과 안내 (2차) | 폐문부재 |
| 천*호 | 경기양평가7*** | 강원도 원주시 흥업면 울업 2길 15-1 ***호 |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기간경과 안내 (1차) | 주소불명 |

2. 공고기간: 2023. 6. 5.(월) ~ 2023. 6. 20.(화) (15일간)

3. 공고내용

가. 이륜자동차의 도난·사고 발생 또는 동절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이륜자동차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 동안 해당 이륜자동차의 정기검사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. 「대기환경보전법」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의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유효기간연장(유예)신청서에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과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자치단체에 제출하시면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정기검사를 유예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나.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「대기환경보전법」 제92조제11호 및 제94조제6항, 동법 시행령 제67조 및 별표15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최대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다. 이 통지서를 받기 전에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았거나 전출·이전·말소등록 등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자치단체에 전화, 팩스 또는 우편 등으로 통지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.

4. 문의처 : 원주시 기후에너지과 미세먼지팀(☎033-737-3046)